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91
----------	---------

제출년월일 : 2002.

제출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함.(안 제5조제1호)
-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25~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호)
-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준칙안 [도환경67501-2208(99.11.2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규칙 별표 4 제5호의 가목”을 “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를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규칙 별표4 제5호의</u>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u>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생략)</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u> -----</p> <p>3 ----- ----- <u>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u>-----</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현행과 같음)</p> <p>1.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u></p>

현행	개정안
<p>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 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p> <p>3. (생략) (신설)</p>	<p>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3.(현행과 같음)</p> <p>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2. (생략) (신설)</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 ----- .</p>

<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월	처리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 재활용량 kg/월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계시장 ㉞		